취창업지원 운영 규정

전문제정 2019.04.17. 개정 2021.01.22. 개정 2022.03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대학 취창업 지원 업무 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

계열(학과) 학생(전공심화과정 포함) 및 취창업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1.01.22.>

1.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2. 취업·창업정보 제공
3.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창업준비 컨설팅, 기타 창업관련 업무
5. 취업상담, 진로상담 및 졸업생 취업 추수지도에 관한 업무
6. 취업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
7. 취업홍보 및 취업처(산업체) 발굴에 관한 업무
8.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환류
9. 기타 진로 및 취업·창업에 관한 사항

제3조 (조직구성)

취업창업지원팀에는 업무를 담당할 팀원 및 전문상담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 (위원회)

1. 취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취창업진로위원회를 둔다.
2. 취창업진로위원회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성과금)

총장은 취업률 우수학과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세칙)

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01.22., 2022.03.04.>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및 창업지원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부 칙(2021.01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